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조승환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건립 중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명을 「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국립해양박물관법」이 개정(법률 제19497호, 2023. 6. 20. 공포, 2024. 1. 1. 시행)됨에 따라,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

국립해양박물관 및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운영평가의 기준 중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경영실적평가와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여 운영평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임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7.6. ~ 8.1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”을 “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국립해양박물관법」”을 “「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2조 전단 중 “「국립해양박물관법」”을 “「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”로, “국립해양박물관(이하 “박물관”이라 한다)”을 “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해양박물관(이하 “박물관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.

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(단위: 만원)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법 제22조를 위반하여 국립해양박물관·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아닌 자가 국립해양박물관·국립인천해양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	법 제26조 제1항	150	300	500

사용한 경우				
--------	--	--	--	--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</u> 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국립해양박물관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박물관자료) 「국립해양박물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<u>국립해양박물관</u>(이하 “박물관”이라 한다)의 설립목적의 달성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박물관이 수집·보존·관리·조사·연구·전시할 학문적·예술적 가치가 있는 해양문화 및 해양수산업 등과 관련된 역사·고고(考古)·민속·예술·과학·기술·산업 등에 관한 유형적·무형적 자료를 말한다. 이 경우 무형적 자료는 부호·문자·음성·음향·영상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로	<u>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 제1조(목적) ----- 「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-----. 제2조(박물관자료) 「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----- 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해양박물관(이하 “박물관”이라 한다)-----

한정한다. 제14조(운영평가의 실시) ① (생략) ② 운영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<u>박물관의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: 책임경영·업무효율성의 정도, 예산·조직·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등</u> 2.·3. (생략) ③ (생략)	-----. 제14조(운영평가의 실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<u><삭 제></u> 2.·3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--	---